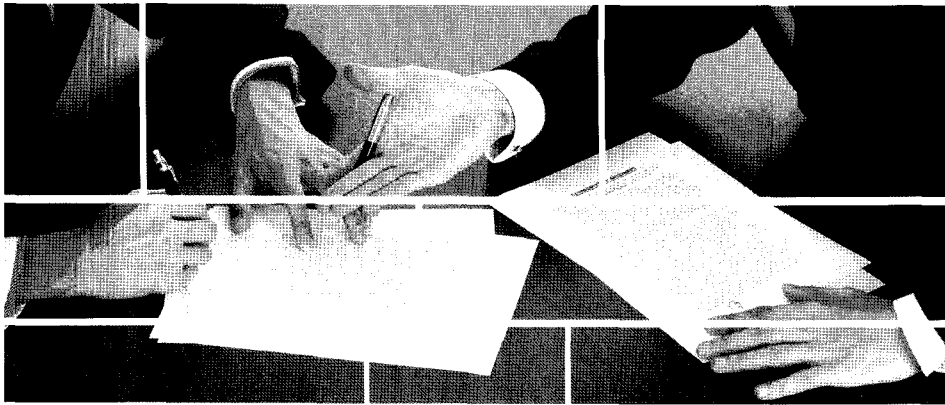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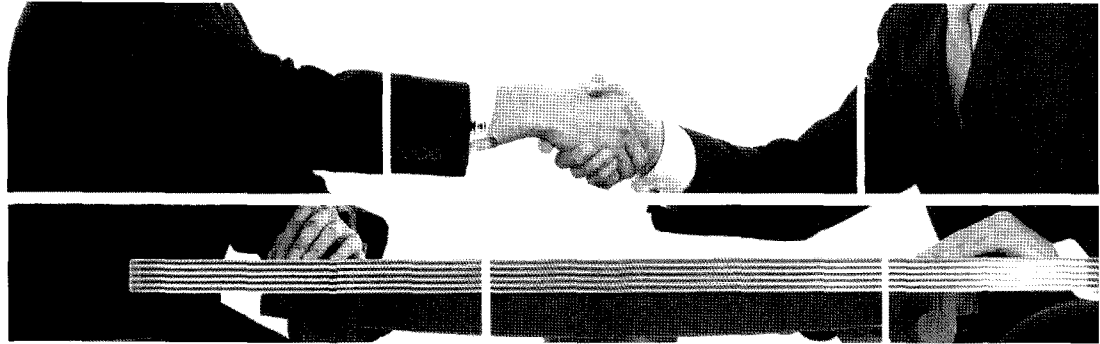


**점** 차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개인까지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권리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 및 개인에게 출원 관납료의 할인 혜택을 늘려 50%에서 70%까지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출원인들의 출원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출원 시 사내 부서가 아닌 지식재산권 대리인 즉, 변리사를 통하여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비용이 경감되었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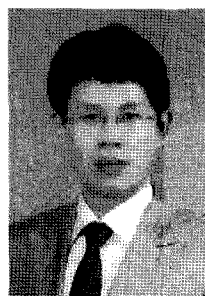
그럼, 중소기업에서 지식재산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출원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각 회사별 여러 가지 방법과 노하우가 있겠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IP 전담부서가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비용적 부담과 필요성 부재로 인하여 겸임인력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큰 부작용의 부메랑이 되어 회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번째로 권리가 명확히 청구되지 않아 회사가 필요로 하는 권리가 지식재산권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비록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판매제품이 경쟁사 권리에 침해될 경우 구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두번째로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권리 확보가 아니라 노하우로 가져가야 하는지 또는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리인에게 위임함으로써 회사 경영과 일치하지 않는 출원이 진행됨에 따라 출원 및 관리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IP 전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IP 전담부서는 회사 경



영 마인드를 정확히 숙지하여 지식재산권을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유창할 수도 있지만 회사 경영과 지식재산권이 일치되어야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 창출될 수 있으며 이들이 불일치할 경우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지식재산권만 확보하게 됨으로써 비용적, 시간적, 인력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IP 전담부서에서는 지식재산권법을 명확히 숙지하여 대리인에게 위임된 명세서가 명확한 권리범위를 청구하고 있는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지식재산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를 파악하여 추가 관리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IP 전담부서원은 명세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 존각을 다투는 제품이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물론, 대리인이 공개하진 않겠지만) 방어적 출원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명세서를 작성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금상첨화이겠다. 명세서 작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다.

이와 같이 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일수록 IP 전담부서를 두어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 환 진**

현 (주)필룩스 특허경영팀 팀장  
현 연세대학교 지식재산권 법무대학원 재학